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12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우종혁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8. 3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처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사회진출 지원 (안 제5조)
 - 구민 홍보 (안 제6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2023. 8. 21. ~ 8. 25.(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사회에 첫걸음 내딛고 취업하고자 하는 강남구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하여 취업에 소요되는 시행착오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려는 생산적 조례안이라고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제명과 같이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사회진출 지원), 제6조(구민 홍보),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 강남구도 이미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데, 나머지 두 개의 조례와 비교해본다면,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회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 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 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공간의 설치·운영	제4조(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정보제공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정책 모형 및 시스템 개발 4.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6.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원 7. 청년 취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9.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본 조례안의 지원내용은 취업과 면접 준비를 위한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어 현행 조례들이 총론격에 해당한다면 본 조례안은 각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항을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제2항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사회진출 또는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¹⁾’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을 것이나, 안 제5조제4항에서 중복수혜의 차단을 규정하고 있어,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강남구가 고품질의 새로운 면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남구 청년들에게 선택범위를 넓혀 준다면, 대학일자리센터를 찾기보다는 관내 서비스가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유용한 점도 있을 것임.

○ 이외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할 사항으로는 안 제1조(목적) 부분 내 “사회·경제적 기반을”의 문구임. 이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과 맥락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내 종합대학이 없는 강남구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약 15만명의 청년 중 미취업 청년층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에 연령상의 수혜폭이 넓어 ‘청년 사회 첫걸음’ 취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으나,

1) Q.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고졸미취업 청년, 타대생, 일반 취업준비청년 등 지역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특강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2021년 이전의 사업유형을 유지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청년고용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 (2022. 5.), 28쪽 참조>

- 향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정책집행과 관련한 정책조사 연구를 통해 발전적으로 보완시켜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12호

제안일자 : 2023.8.3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1조(목적) 내 일부 문구를 안 제5조(사회진출 지원)와 맥락적으로 부합하게 삭제하여 조례안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안 제1조 “사회·경제적 기반을” 문구 삭제 후 조문을 매끄럽게 수정(안 제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원함” 을 “지원을 함”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
 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
 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민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